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61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정현 · 박홍배 · 조인철
이용우 · 김우영 · 김 현
이해민 · 윤준병 · 김태년
한민수 · 박선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이 절 및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에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금액(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40만원, 2명인 경우 8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더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연간 250만원에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금액(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40만원, 2명인 경우 8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더한 금액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
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
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나. ----- -----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20

28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_____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 설>

더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연간 250만원에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금액(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40만원, 2명인 경우 8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더한 금액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

	<u>만원</u> 을 한도로 한다)
--	---------------------